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군민안전과장)
제출 연월일	2019.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 2019.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의결주문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2017.01.28.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고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19. 8. 20 ~ 9. 9, 의견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바. 기타 참고사항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군민안전과	
연 락 처	054-950-6643

관련 법령

□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개정 2014. 11. 19.>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